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웅식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 여러분!

체감경기는 최저이고 청년은 취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접근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50%의 감면혜택을 주어 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재능을 찾고 서울시의 지원으로 창업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